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16
----------	-------

발의연월일 : 2023. 12. 20.

발 의 자 : 이종성 · 백종현 · 배준영
윤창현 · 김용판 · 전봉민
조정훈 · 양금희 · 김성원
성일종 · 박덕흠 · 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민간 사업주에 비하여 높게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

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자기관·출연기관은”을 “출자기관·출연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및 공공직유관단체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u>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특례</u>) 제28조에도 불 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출자기관· 출연기관</u> 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 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제28조의2(<u>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 례</u>) ----- ----- ----- ----- ----- <u>출자기관· 출연기관</u> , 상시 50명 이상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u>단체</u> 는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